

www.kli.re.kr/klips

#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원천

김지경\*

이 글에서는 최근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는 은퇴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은퇴자의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원천 및 소득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은퇴사유에 있어서 은퇴자 1,023명의 46.9%가 '본인의 건강'으로 인해 은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가지 범주로 구분된 은퇴사유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는 정년퇴직과 권고사직/명예퇴직, 여성의 경우는 가족원을 돌보기 위한 사유가 본인건강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평균 은퇴연령에 있어서는 남성이 58.3세, 여성이 55.2세로 여성의 은퇴시기가 남성보다 이르며, 특히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은퇴한 여성의 평균연령은 46.5세로 매우 이른 시기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원천과 소득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776명의 은퇴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은퇴자들은 은퇴 후 월평균 80만1천원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월평균 소득액은 큰 차이를 보여, 남성(94만7천원)과 여성(61만원)의 소득액 차이가 33만7천원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퇴사유에 있어서도 본인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은퇴자의 소득(54만8천원)이 정년퇴직한 은퇴자 소득(116만2천원)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쳐 은퇴 사유에 따른 은퇴 후 경제적 복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들어가며

우리사회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자의 인구비중이 7.3%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1). 향

후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기대수명도 연장되어 노년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최 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평 균 은퇴연령의 감소 및 조기은퇴율의 증가는 은퇴자

<sup>\*</sup>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책임연구원(jkkim@kli.re.kr)

<sup>1)</sup>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구성비가 7%를 초과하는 상태를 지칭함.

의 대상을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 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는 단순하게 고령 의 노인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은퇴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은퇴에 대한 관심으로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우리사회가 증가하는 노령인구나 연장되고 있는 노령 인구의 은퇴 후 시기를 부양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미 흡한 수준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은퇴한 노인들의 경 제적 자원의 조달과 사회적 부양 방안을 모색해 왔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각 연구들에서 정의된 은퇴자의 개 념이 연령이나 연금 또는 사회보장혜택의 수혜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몇 세 이상의 노인'으로 간주하거나 '연금 또는 사회보장지원비를 받는 자'로 정의되었다 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정의는 은퇴자를 일정연령 이상 의 노인인구 전체를 지칭하거나 연금을 받는 협소한 범위내의 고령자로 제한하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령으로 인한 은퇴만을 고려한 개념이기 때문에, 외환 위기 이후 증가되고 확대된 중 · 장년층의 은퇴는 포함 할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은퇴와 관련된 이슈를 논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은퇴는 분명 노동시장 또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념이며, 은퇴자는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원으로 조달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자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퇴자를 연령이나 연금수혜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개념화 할 수는 없으며,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인한 은퇴집단의 중·장년층으로의 확대는 더이상 은퇴자를 노령자로 한정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여성의 경우는 본인의 건강이나 노령의 이유보다는 자녀의 양육이나 다른 가족원을 돌보기 위하여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은퇴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은퇴자의 성격규명은 그리 간

단하게 이루어 질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은퇴의 사유가 다양하고 은퇴자의 연령범위가 확대되어 그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은퇴와 관련하여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은퇴 후 경제적 복지는 은퇴자의 성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한 후 접근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은퇴 이후 시기의 경제적 자원 및 사회부양 시스템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는 은퇴사유를 기준으로 은퇴자를 구분하고 각 집단별 주된 소득원천과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할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은퇴자의 개념을 재정립 한 후 은퇴의 구체적인 은퇴사유를 성, 연령, 은퇴시기별로 나누어살펴보고, 은퇴자의 은퇴 후 소득원천과 소득수준을 은퇴사유별로 분석함으로써 은퇴 이후 시기의 경제적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보완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은퇴의 정의 및 측정

#### 1) 은퇴의 정의

은퇴 및 은퇴자와 관련한 기존연구들에서 가장 빈번 히 적용된 은퇴의 결정기준은 '연령'으로 55세, 60세, 또는 65세가 기준연령이 되었다. 연령이 은퇴자와 비 은퇴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근거는 관련법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노인복지법에서는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로연금 수혜자격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완전노령연금의 수급 시기는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의 자활대상자는 60세 이하로 정해져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64세 미만으로 정하였으며,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를 64세 이하로 정하였지만, 60세 이상 재취업자

#### 〈표 1〉 은퇴자 구분

	구분	전 체		남자		여 자	
	1 4	사례수(비율)	평균연령(세)	사례수(비율)	평균연령(세)	사례수(비율)	평균연령(세)
	완전 은퇴	982(96.0)	67.3	492(94.6)	68.2	490(97.4)	66.3
은토	후 소일거리	41(4.0)	63.3	28(5.4)	63.2	13(2.6)	63.5
	계	1,023(100.0)	67.1	520(100.0)	67.9	503(100.0)	66.2

는 제외하고 있다. 기존의 각 연구마다 일관된 연령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유는 관련법의 기준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관련법을 근거로 하여 은퇴자를 정의할 경우 은퇴자는 일정연령 이상의 노인인구로 과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연령 이외의 또 다른 결정기준은 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정의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을 최초로 수급하는 시점을 은퇴시기로 정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일본과는 달리 공적연금의 도입역사가 짧아 공적연금 수급 대상자나 수급수준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하나로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도 1994년 6월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은퇴를 정의할 경우 은퇴자의 수는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구에서는 연령이나 연금수급의 기준 이외에 경제 활동참가여부를 기준으로 은퇴를 정의하기도 한다. 그리고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이 일정수준이하로 급격히 축소된 것의 경험여부에 따라 은퇴자를 구분하기도 한다. 연구자에 따라 다소 그 기준에 차이가 있어 연간 1000시간미만 노동하는 사람을 은퇴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주당 30시간미만 일하는 자를 은퇴자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또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를 은퇴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구의 연구에서 적용된 은퇴의 정의는 은퇴가 노동시장의 경험이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개념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의라 생각된다.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 '중·고령자' 부가조 사에서는 국내의 선행연구에 적용된 은퇴자의 분류기 준과 서구연구들에서 나타난 분류기준을 고려함과 동 시에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더하여 은퇴 및 은퇴자 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우선 은퇴를 '본격적인 소득활 동을 그만두고 조사당시 시점에 일을 하지 않고 있거 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 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 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개념화하고, 은퇴상 태에 있는 개인을 은퇴자로 정의하였다. 이 같은 개념 에는 연금수급여부나 사회보장지원비 수급자의 여부 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대상자 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개 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현재의 주된 경제활동참가 여 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반영된 가장 적절 한 정의로 평가될 수 있겠다.

#### 2) 은퇴상태의 측정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 '중·고령자' 부가조 사에서는 만50세 이상 개인들의 은퇴상태를 '①은퇴 하였다, ②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였으나 소일거리 일 은 계속하고 있다, ③은퇴하지 않았다, ④과거에 한 번 도 취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의 네 가지로 측정하였는 데, 본 분석에서는 ①과 ②의 응답자 1,023명을 분석대 상자인 '은퇴자'로 설정하였다.

<표1>은 분석대상자인 은퇴자를 '완전 은퇴자' 와

#### 〈표 2〉 구체적 은퇴사유의 분류

은퇴사유 구분	구체적 은퇴 사유			
①정년퇴직	· 정년퇴직으로 인해			
	·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인해			
②권고사직/명예퇴직	· 해고/일시해고 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 현고/기숙/ 중계 시축	·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 고용주나 일로부터의 압박감 때문에			
③본인건강	·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 본인의 수입이 은퇴를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서			
④가계여유 또는 여가	· 배우자의 수입이 은퇴를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서			
(H) 기계위표 그는 역기	·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 더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서			
⑤가족원 돌보기	·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 결혼/출산/육아 때문에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는 자'로 나누고 그 비율과 평균 연령을 성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우선 전체 은퇴자의 평균연령은 67.1세이고, 완전은퇴자의 경우(67.3세)가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는 은퇴자(63.3세)보다 평균연령이 4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은퇴후 소일거리를 할수 있는 여력이 연령수준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은퇴자를 구분하여보면 전체의 96%인 982명이 완전 은퇴자 이고, 4%가 은퇴후 소일거리를 하며, 남성(5.4%)이 여성(2.6%)보다 은퇴후소일거리를 하는 비율이 2.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은퇴사으

본 분석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중·고령자' 부가조 사에서 15개 항목으로 측정한 직접적인 은퇴사유를 < 표2>와 같이 ①정년퇴직으로, ②권고사직/명예퇴직으 로, ③ 본인건강상의 이유로, ④ 가계의 여유 또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⑤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5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에 입각하여 <표3>에서는 은퇴사유의 분포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주된 은퇴사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가 4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권고사직/명예퇴직 (16.4%)과 정년퇴직(14.5%)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에 따른 은퇴가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비율의 은퇴사유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52.5%)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의 건강 이외의 사유로는 남성과 여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는 정년 퇴직(25.4%)과 권고사직/명예퇴직(20.0%)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성의 경우는 가족원 돌보기 (17.7%), 가계의 여유 또는 여가(13.9%)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은퇴가 일자

#### 〈표 3〉 성별 은퇴사유

(단위: N, %)

은퇴사유	전 체	남자	여자
정년퇴직	148(14.5)	132(25.4)	16(3.2)
권고사직/명예퇴직	168 (16.4)	104 (20.0)	64(12.7)
본인건강	480(46.9)	216(41.5)	264 (52.5)
가계여유 또는 여가	118(11.5)	48 (9.2)	70(13.9)
가족원 돌보기	109(10.7)	20(3.9)	89(17.7)
계	1,023 (100.0)	520(100.0)	503(100.0)

# 〈표 4〉 은퇴사유별 은퇴연령

(단위:세)

은퇴사유	전 체	남자	여자
전체 평균	56.8	58.3	55.2
정년퇴직	59.6	59.6	59.6
권고사직/명예퇴직	56.7	57.1	56.2
본인건강	57.9	58.2	57.7
가계여유 또는 여가	54.9	57.5	57.1
가족원 돌보기	48.5	57.3	46.5

리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여건에 기인하는 결과의 성격이 강하고, 여성의 은퇴는 가족여건에 기인하는 것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자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성별의 차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4>는 은퇴사유에 따라 평균 은퇴연령을 성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우선 은퇴자 전체의 평균 은퇴 연령은 56.8세이고, 정년퇴직으로 은퇴한 은퇴자의 은 퇴연령이 59.6세로 가장 늦은 시기에 은퇴하며, 본인의 건강(57.9세), 권고사직/명예퇴직(56.7세) 순으로 늦게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정년퇴직→본인의 건강→가계여부 또는 여 가의 순으로 은퇴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족원 돌보기'의 사유로 은퇴한 경우는 남성과 여성 의 평균 은퇴연령의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성의 경우는 가족원을 돌보기 위하여 은퇴하더라도 은퇴연령(57.3세)이 권고사직/명예퇴직(57.1세)이나 가계여유 또는 여가(57.5세)로 인한 은퇴사유를 갖는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여성의 경우는 평균 은퇴연령 46.5세로 권고사직/명예퇴직(56.2세)이나 가계여유 또는 여가(57.1세)로 인한 은퇴의 경우와 매우 큰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이의 돌봄이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1차 적으로 여성이 그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성의 조기은퇴에 대한 논의는 자녀의 양육서비스 지원체계 또는 가사서비스 지원체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산업구조의 변화

#### 〈표 5〉 은퇴사유와 은퇴시기

(단위: N.%)

사유 시기*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본인건강	가계여유/ 여가	가족원 돌봄	계
'91이전	26(17.6)	30(17.9)	126(26.3)	41(34.8)	51(46.8)	274(26.8)
'91 – '9 <del>6</del>	48(32.4)	45(26.8)	137(28.5)	38(32.2)	19(17.4)	287(28.1)
'97 – '99	45(30.4)	47(27.9)	71(14.8)	20(17.9)	14(12.8)	197(19.2)
'00 – '03	29(19.6)	46(27.4)	146(30.4)	19(16.1)	25(23.0)	265(25.9)
계	148(100.0)	168(100.0)	480(100.0)	118(100.0)	109(100.0)	1,023(100.0)

<sup>\*</sup>은퇴사유별 사례수가 적으므로 '97년 이전은 6년 간격으로 '97년 이후 시기는 3년 간격으로 묶어서 제시하였음.

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평균 은퇴연령이 감소하였고 조기 은퇴율이 증가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은퇴자의 은퇴사유는 은퇴시기에 따라 그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분석에 서는 은퇴사유를 은퇴시기별로 나누어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5가지 범주의 은퇴사유의 비중이 은퇴시 기의 분포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권고사 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은퇴한 경우가 1997년과 1999년 사이에 가장 높은 비율(27.9%)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와는 달리 본인의 건강으로 인한 은퇴가 1997년 이전에 비해 1997년과 1999년 사이에 절반 가 까이 감소하였고, 가계의 여유 또는 여가로 인한 은퇴 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기점 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여성의 주된 은퇴사유가 되는 가족원 돌봄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 그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조기은퇴자가 양산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은퇴는 감소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해당되는 대 상자 수가 매우 적기는 하나 가족원을 돌보기 위한 여 성의 은퇴가 상대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증가했다는 사

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의 은퇴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석 안에서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소득원천

한국노동패널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는 중· 고령자의 현재(조사당시) 소득을 <표6>의 9가지 항목 으로 측정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은퇴자의 9가지 소득 항목을 ①근로소득, ②연금소득, ③자산소득, ④이전소 득, ⑤기타소득의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은퇴 이후의 소득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위의 9가지 항목의 소득원천이 모두 없다고 응답한 247명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표7>의 기타소득에 응답된 세부내용의 93.1% 정도가 자녀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이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소득원천이 없다고응답한 247명의 경우도 자녀 및 친인척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들의응답을 기타항목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각 소득원천별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소득액수가 조사되지 않아 이들을 포함하여 은퇴 후 소득정도를 파악할 경우 편의(bias)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들을 제외한 776명

#### 〈표 6〉 소득원천의 분류

소득원천 구분	구체적 소득원천
① 근로소득	· 본인의 근로소득(임금, 사업소득 등)
(I) C.X.Y.7	· 배우자의 근로소득(임금, 사업소득 등)
②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 taxa	· 개인연금소득(은행, 보험회사 등에 개인이 가입한 연금)
③ 자산소득	· 금융자산소득(저축, 주식, 보험 등)
@ \\ \\ \\ \\ \\ \\ \\ \\ \\ \\ \\ \\ \\	· 부동산소득(임대수입 등)
④ 이전소득	· 사회보험소득(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등)
⊕ 기선エㅋ	·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⑤ 기타소득	· 그 외기타 소득(가족원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등)

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소득원천과 월평균 소득액수를 분석하였다.

<표7>에는 기타소득의 세부내용과 함께 성별 은퇴 이후의 소득원천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기타소득 (30.0%)의 소득원천을 갖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배우 자의 근로소득(21.5%),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 금(14.8%)이 그 다음 순이다. 기타의 소득원천을 갖는 비율이 적지 않은 것은 은퇴자가 자녀를 비롯한 친인 척의 사적이전소득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양되고 있음 을 뜻한다. 이는 오랫동안 유교문화권 하에서 가족원 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 의 덕목으로 자리 잡아 온 우리네 역사·문화적 배경 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찍이 공적연 금제도가 정착된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공적이전소 득이 노년기의 주된 소득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 다면, 우리사회의 근로능력이 상실된 중 · 고령층에 대 한 부양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소득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소득원천은 근로소득 중 배우자의 소 득으로 여성(24.7%)이 남성(19.2%)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원천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16.8%)이고, 여성의 경우는 이전소득 중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비 (19.0%)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금을 비롯한 공적소 득보장체계가 경제활동참가자 및 노동시장의 경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남성의 경우는 은퇴 이후 소득원천으로 공적연금을 가지는 비율이 성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은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비를 받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사적이전소득이나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부양이 안정적이지 못 할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은퇴 후 소득의 상당부분이 사적이전자원의 형태이든 동거를 통한 부양이든지 간에 자녀를 비롯한 가족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다. 이는 곧 은퇴 후 소득원천이 가족의 형태와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8>에서 는 가족형태를 ①1인 단독, ②부부, ③부부와 그들의 미

# 〈표 7〉 성별 소득원천

(단위: N, %)

구분	소득원천		전체	남자	여자
근로소득	본인		39(5.1)	23(5.2)	16(4.8)
L-1-1-7	배우자		167(21.5)	84(19.2)	83(24.7)
연금소득	공적연금		91(11.7)	74(16.8)	17(5.1)
U D X 7	개인연금		2(0.3)	1(0.2)	1(0.3)
자산소득	금융		32(4.1)	25(5.7)	7(2.1)
ハセエコ	부동산		78(10.1)	57(12.9)	21 (6.2)
이전소득	사회보험		19(2.4)	12(2.7)	7(2.1)
7.6.2.9	정부/사회단체보조금		115(14.8)	51(11.6)	64(19.0)
	기타소득원		233 (30.0)	113(25.7)	120(35.7)
		자녀소득/자녀가주는 용돈	173 (74.2)	86(76.1)	87(72.5)
기타소득		친지보조금	44(18.9)	20(17.7)	24 (20.0)
71911		그외	2(0.9)	1 (0.9)	1(0.8)
		무응답	14(6.0)	6(5.3)	8(6.7)
		소계	233(100.0)	113(100.0)	120(100.0)
계	계			440(100.0)	336(100.0)

혼자녀, ④ 한 부모와 그의 자녀, ⑤비핵가족으로 나누고 소득원천의 5가지 범주가 아닌, 구체적인 소득항목 9가지에 따른 은퇴 후 소득원천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1인 단독 은퇴자의 경우는 가족 및 친지의 사적이전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응답이 60.2%로 나타 났고, 이를 제외하고는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는 비율(21.2%)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가족과 부부 및 그들의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경우는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원천으로 밝혀졌다. 한 부모 자녀의 가족이나비핵가족의 경우는 1인 단독 은퇴자의 경우와 같이 기타소득(각각 42.5%, 37.8%)과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금(각각 25.0%, 24.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적자원이전을 통한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9>는 은퇴자의 은퇴사유별 평균 소득원천의 수 및 월평균 소득액을 성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전체 은퇴자는 은퇴후 월평균 80만1천원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월평균 소득액(94만7천원)이 여성(61만원)보다 33만7천원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은퇴사유에 따른 월평균 소득액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정년퇴직의 사유로 은퇴한 경우가 116만2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은퇴한 경우는 월평균 소득액에 있어서는 83만8천원으로 가계의 여유 또는 여가로 은퇴한 경우에

# 〈표 8〉 가족형태와 은퇴 후 주 소득원천

(단위: N, %)

가족형태 소득원천	1인	부부	부부+미혼 자녀	한 부모+자녀	비핵가족
본인 근로	3(2.7)	10(4.5)	16(7.6)	1(2.5)	9(4.7)
배우자 근로	1(0.9)	53(24.2)	88(41.7)	-	25(13.9)
공적연금	5(4.4)	40(18.3)	26(12.3)	2(5.0)	18(9.5)
개인연금	-	-	-	-	2(1.0)
금융자산	2(1.8)	13(5.9)	11(5.2)	2(5.0)	4(2.2)
부동산자산	9(7.9)	26(11.9)	26(12.3)	7(17.5)	10(5.2)
사회보험	1(0.9)	5(2.3)	8(3.8)	1(2.5)	4(2.2)
정부/사회단체보조금	24(21.2)	19(8.7)	14(6.6)	10(25.0)	47(24.4)
기타	68(60.2)	53(24.2)	22(10.5)	17(42.5)	73(37.8)
계	113(100.0)	219(100.0)	211(100.0)	40(100.0)	193(100.0)

## 〈표9〉 은퇴사유별 평균 소득원천의 수 및 월평균 소득액

(단위 : 만원)

은퇴사유	전 체	남자	여자
전체 평균	80.1	94.7	61.0
정년퇴직	116.2	119.2	83.3
권고사직/명예퇴직	83.8	95.1	61.4
본인건강	54.8	68.0	42.1
가계여유 또는 여가	113.7	137.4	93.2
가족원 돌보기	95.5	96.8	95.1

이어 세 번째의 순위를 나타내었다. 이는 은퇴 이후의 소득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의 경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으로 은퇴한 경우가 월평 균 119만2천원으로 가계의 여유 또는 여가의 사유로 은퇴한 경우 137만4천원에 이어 두 번째의 순위를 나 타내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가족원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은퇴한 경우(95만1천원), 가계여유 또는 여가 (93만2천원), 정년퇴직(83만3천원)으 순으로 많은 소득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분석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46.9%) 은 퇴자의 사유가 되는 본인 건강으로 은퇴한 경우 성별 에 상관없이 은퇴 후 가장 낮은 소득을 갖는다는 것은, 이들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일정수 준의 경제적 복지를 유지하기 힘든 집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은퇴자들을 취약집단으로 고려하여 절대빈곤 층이 아니더라도 이들에 대한 별도의 소득보장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맺음말

이 글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현재의 경제활동상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을 반영하여 은퇴자를 정의하였고, 이 개념이 적용된 은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구체적인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원천 및소득수준을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분석의 주된 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은퇴자의 절반에 가까운 46.9%의 은퇴자 가 본인의 건강으로 인하여 은퇴를 하였고, 본인의 건 강 사유로 은퇴한 은퇴자의 평균 은퇴연령은 정년퇴 직의 경우보다 이른 시기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은 퇴 후 소득수준은 다른 은퇴사유를 갖는 경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기에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은퇴자의 경우 노동 시장에서의 경력이 짧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 력을 기본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수혜연령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에 은퇴한 은퇴자들이 은퇴 후 안정되고 일정수준의 경제적 복지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취 약한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건강으로 인 해 은퇴한 은퇴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들의 은퇴 후 경제적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현 제도의 점검과 제도 적 보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은퇴사유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족원 돌보기' 위하여 은퇴한 여성의 비율은 같은 사유로 은 퇴한 남성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 유로 은퇴한 여성은 매우 이른 시기에 은퇴할 뿐만 아 니라 최근 3년 동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일반 적으로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낮고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일자리를 갖는 비 율이 높으므로, 이른 시기에 가계여건으로 은퇴하는 여성들은 은퇴 후 안정적인 공적이전소득을 갖기 어 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은퇴는 남성과는 달리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자녀의 양육 그리고 다른 가족원을 보살피는 등 생애주기의 사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은퇴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여성의 은 퇴와 은퇴 이후 소득과 관련해서는 전체 은퇴자에 대 한 이해와 더불어 생애주기측면에서의 접근한 여성은 퇴자에 대한 별도의 심층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은퇴자 부양의 기능은 여전히 상당부분 자녀 및 친지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상태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급변하는 가족문화를 고려해보면 자녀에 의한 부양은 향 후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적지원 체계의 안정적정착과 더불어 사적이전소득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재 가계가 부담하고 있는 부양비용이 사회로 이전되었을 경우에 우리사회의 부담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이다.